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적측량 대행자 신청 서류의 인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, 대행자 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격 처리하였던 것을 해당 항목의 배점을 “0”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며, 책임수행기관의 업무공정 비율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

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다목 중 “시·도”를 “시·도 및 「공간정보산업 진흥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”로 한다.

제12조제7항 중 “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할 수 있다”를 “해당 항목의 배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제2호 중 “제30조”를 “제29조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제30조”를 “제29조”로 한다.

제17조제1호 중 “8”을 “7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23”을 “27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6”을 “7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21”을 “23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5”를 “7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9”를 “6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호 중 “100분의 14”를 “100분의 9”로 한다.

제18조제5항 중 “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라 통지 받은”을 “책임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그”를 “책임수행기관은 그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40조 중 “2021년 7월 1일”을 “2025년 1월 1일”로, “6월 30일”을 “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 평가기준

심사항목		평가요소				배점										
1. 지적 측량 기 술 자 (50점)	책임 기술자 (18점)	등급	○ 특급기술자			10	50									
			○ 고급기술자			8										
			○ 중급기술자			6										
	실적	○ 기술자 경력 10년 이상			3											
		○ 기술자 경력 5년 이상 ~ 10년 미만			2											
		○ 기술자 경력 5년 미만			1											
참여 기술자 (26점)	인원	○ 최근 3년 이내 3,000필지 이상			5											
		○ 최근 3년 이내 1,000필지 이상 3,000필지 미만			4											
		○ 최근 3년 이내 1,000필지 미만			3											
교육이행(6점)	인원	○ 책임기술자를 제외한 지적기능사 이상의 지적측량 기술자			14											
		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5인 이상</td><td>4인</td><td>3인</td><td>2인</td></tr><tr><td>평점</td><td>14</td><td>12</td><td>10</td><td>8</td></tr></table>			구분	5인 이상	4인	3인	2인	평점	14	12	10	8	14	
		구분	5인 이상	4인	3인	2인										
평점	14	12	10	8												
등급	○ 참여기술자별 등급 점수 합산 / 인원 수			12												
	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특급</td><td>고급</td><td>중급</td><td>초급</td><td>기능사</td></tr><tr><td>평점</td><td>12</td><td>11</td><td>10(+2)</td><td>9(+2)</td><td>8(+2)</td></tr></table>			구분	특급	고급	중급	초급	기능사	평점	12	11	10(+2)	9(+2)	8(+2)	12
	구분	특급	고급	중급	초급	기능사										
평점	12	11	10(+2)	9(+2)	8(+2)											
* 중급 이하 참여기술자 중 만34세(군필자 만39세) 이하 1인당 +2점 추가 적용(예: 중급의 경우 ‘10점 + 2점 = 12점’)																
2. 측량장비(5 점)	GNSS		○ 3대 이상			3	5									
	T/S 측량기		○ 2대 이상			2										
3. 당해연도 참여 중첩도(5 점)	업무중첩 건수		○ 1대			1	5									
			○ 0건			5										
			○ 1건			4	5									
			○ 2건			3										
			○ 3건			2										

심사항목		평가요소			배점			
4.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(10점)	해당시·도를 제외한 전국 지적재조사 수행 필지 수	○ 4건 이상			1	10		
		○ 3,000필지 이상			4			
		○ 2,000필지 이상 3,000필지 미만			3			
		○ 1,000필지 이상 2,000필지 미만			2			
		○ 1,000필지 미만			1			
	해당 시·도 지적재조사 수행 필지 수	○ 3,000필지 이상			6			
		○ 2,000필지 이상 3,000필지 미만			5			
		○ 1,000필지 이상 2,000필지 미만			4			
		○ 500필지 이상 1,000필지 미만			3			
		○ 500필지 미만			2			
5. 업체 신용도 (6점)	신용평가 등급	회사채	기업어음	기업신용		6		
		BB0 이상	B+ 이상	BB0 이상	2.6			
		B- 이상~BB0 미만	B- 이상~B+ 미만	B- 이상~BB0 미만	2.2			
		CCC+ 이상~B- 미만	C+ 이상~B- 미만	CCC+ 이상~B- 미만	1.8			
		CCC+ 미만	C- 이하	CCC+ 미만	1.4			
		미제출	미제출	미제출	0			
	재무 비율	○ 평점 = 비율(A)+비율(B)x0.2					0.4	
		○ 최근 회계연도의 업체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함						
		자기자본 비율	56.5% 이상	56.5% 미만	56.0% 미만	55.5% 미만		55.0% 미만
		비율(A)	100% (1.0)	90% (0.9)	80% (0.8)	70% (0.7)		60% (0.6)
		유동비율	220% 이상	220% 미만	215% 미만	210% 미만		205% 미만
		비율(B)	100% (1.0)	90% (0.9)	80% (0.8)	70% (0.7)		60% (0.6)
		○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비율 및 유동비율에 따른 비율						
		○ 자기자본비율 = 자기자본/총자산						
○ 유동비율 = 유동자산/유동부채								
○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평가								
○ 최초결산서 첨부가 불가한 신생업체의 경우 최하등급(60%) 적용								
신인도	○ 감점항목이 없는 경우					3		
	○ 행정처분 확인서 미제출					(-3)		
	○ 폐업 후 신규 또는 재등록					(-1)		

심사항목		평가요소		배점	
		○ 임금체불사업주(근로기준법 제43조의2)	(-3)		
6. 지역업체 (4점)	광역지자체별 지역업체 등록여부	○ 5년 이상 ○ 3년 이상 ○ 2년 이상 ○ 2년 미만 * 대구·경북, 광주·전남, 부산·울산, 대전·세종·충남은 각각 같은 지역으로 본다.	4 3 2 1	4	
7. 업무수행평가 (10점)	※ 최근 2년간 사업실적(지적소관청 사후평가) 기준에 의함 -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에 의한 등록 관리				10
	측량성과	○ 수행기간 내 성과검사 완료 ○ 수행기간 내 성과검사 미완료(1개 사업지구 이상)	5 2		
	측량수행 (감점)	○ 사업수행 중도포기 : 5점 감점 ○ 사업완료 필지 수 대비 지적사항 발생 필지 수 - 지적사항 발생 시 기본 1점 감점 - 0.1% 이상의 지적사항 발생 시, 0.1%당 0.2점 감점 ○ 수행자 변경시 미신고 : 건당 1점 감점 ○ 민원 발생 등: 건당 1점 감점 - 경계·면적 측정 누락, 경계 훼손, 기물 파손 등 ○ 지적소관청 보완 요청사항 미이행: 건당 1점 감점	5		
8.정성평가(10 점)	※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수행계획서 대상으로 지적소관청과 책임수행기관이 개별 평가함				10
	지적소관청	○ 지적재조사 업무수행 능력	7		
	책임수행기관	○ 수행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	3		
9. 가점(7점)	청년 고용효과	○ 지적기술자 1인당 1점 × 근무기간 적용계수, 그 외 0.5점, 최대 3점 이내 - 만 34세 이하(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,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)의 신규 채용에 한함 - “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”를 기준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수(피보험자수)가 증가해야 됨 - 근무기간 적용계수 : 지적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	3	7	

심사항목	평가요소		배점	
		(건설기술진흥법,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)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(공고일 기준,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30일 미만: 0.3, 30일 초과 90일 미만: 0.5, 90일 초과 ~ 180일 미만: 0.7, 180일 이상 1)		
	기술사 가점	○ 책임 및 참여기술자 중 “지적기술사” 참여시 가점 부여	2	
	지역경제 활성화	○ 해당 지적소관청에 주사무소 주소지를 둔 지역업체	2	
계	100점 (가점 7점)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대행자 참여 신청) ① 대행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조사행정시스템에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.	제11조(대행자 참여 신청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·나. (생략) 다. <u>시·도에서 발급하는 측량장비 보유현황</u>	2. ----- ---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<u>시·도 및 「공간정보산업 진흥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</u> 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2조(대행자 평가 및 선정) ① ~ ⑥ (생략)	제12조(대행자 평가 및 선정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출서류가 불명확하거나 근거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<u>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할 수 있다.</u>	⑦ ----- <u>해당 항목의 배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.</u>
제14조(대행자의 업무 대행) ① (생략)	제14조(대행자의 업무 대행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
수행기관이 지적재조사측량·
조사를 직접 수행한다.

1. (생략)

2. 제30조에 따라 대행자가 완
료계를 제출한 이후에 대상토
지의 일부가 달라진 경우

3. (생략)

제16조(업무 대행 측량수수료) ①
책임수행기관은 제30조에 따른
완료계를 제출 받은 경우 2주
이내에 대행자에게 업무 대행
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7조(업무공정 비율) 지적재조
사 측량·조사의 업무공정 비율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측량규정 제9조에 따른 지적
재조사지구의 내·외 경계 확
정 : 100분의 8

2.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
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및
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
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:
100분의 23

3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29조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업무 대행 측량수수료) ①
----- 제29조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업무공정 비율)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7

2. -----

----- 27

3. -----

제조사측량 중 필지별 면적산정 : 100분의 <u>6</u>	----- ----- <u>7</u>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계설정 : 100분의 <u>21</u>	5. ----- ----- <u>23</u>
6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 : 100분의 <u>5</u>	6. ----- ----- <u>7</u>
7.·8. (생략)	7.·8. (현행과 같음)
9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상 경계점등록부 작성 : 100분의 <u>9</u>	9. ----- ----- <u>6</u>
10. 측량규정 제14조에 따른 측량성과물 작성(법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지원을 포함한다) : <u>100분의 14</u>	10.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0분의 9</u>
제18조(대행자 관리 등) ① ~ ④ (생략)	제18조(대행자 관리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</u>	⑤ <u>책임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</u> ----- ----- -----.
⑥ 대행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<u>책임수행기관은 그</u> ----- --.

제24조(경계점표지 설치) ① (생략)	제24조(경계점표지 설치) 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40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<u>2021년 7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6월 30일</u> 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40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5년 1월 1일</u> ----- <u>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대행자 참여 신청) ① 대행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조사행정시스템에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.	제11조(대행자 참여 신청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·나. (생략) 다. <u>시·도에서 발급하는 측량장비 보유현황</u>	2. ----- ---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<u>시·도 및 「공간정보산업 진흥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</u> 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2조(대행자 평가 및 선정) ① ~ ⑥ (생략)	제12조(대행자 평가 및 선정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출서류가 불명확하거나 근거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<u>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할 수 있다.</u>	⑦ ----- <u>해당 항목의 배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.</u>
제14조(대행자의 업무 대행) ① (생략)	제14조(대행자의 업무 대행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
수행기관이 지적재조사측량·
조사를 직접 수행한다.

1. (생략)

2. 제30조에 따라 대행자가 완
료계를 제출한 이후에 대상토
지의 일부가 달라진 경우

3. (생략)

제16조(업무 대행 측량수수료) ①
책임수행기관은 제30조에 따른
완료계를 제출 받은 경우 2주
이내에 대행자에게 업무 대행
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7조(업무공정 비율) 지적재조
사 측량·조사의 업무공정 비율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측량규정 제9조에 따른 지적
재조사지구의 내·외 경계 확
정 : 100분의 8

2.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
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및
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
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:
100분의 23

3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29조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업무 대행 측량수수료) ①
----- 제29조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업무공정 비율)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7

2. -----

----- 27

3. -----

제조사측량 중 필지별 면적산정 : 100분의 <u>6</u>	----- ----- <u>7</u>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계설정 : 100분의 <u>21</u>	5. ----- ----- <u>23</u>
6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 : 100분의 <u>5</u>	6. ----- ----- <u>7</u>
7.·8. (생략)	7.·8. (현행과 같음)
9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상 경계점등록부 작성 : 100분의 <u>9</u>	9. ----- ----- <u>6</u>
10. 측량규정 제14조에 따른 측량성과물 작성(법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지원을 포함한다) : <u>100분의 14</u>	10.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0분의 9</u>
제18조(대행자 관리 등) ① ~ ④ (생략)	제18조(대행자 관리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</u>	⑤ <u>책임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</u> ----- ----- -----.
⑥ 대행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<u>책임수행기관은 그</u> ----- --.

제24조(경계점표지 설치) ① (생략)	제24조(경계점표지 설치) 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40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<u>2021년 7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6월 30일</u> 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40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5년 1월 1일</u> ----- <u>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